복지이슈 FOCUS edy-31 371471711

제15호 2021-15

2021, 12,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심사모형 개발을 위한 국내 신용정보 활용가능성 탐색

석희정 연구위원(seokhi@ggwf.or.kr)

목차

- 1.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심사모형 개발의 필요성
- II. <mark>국내 신용정보 결합</mark>제도를 통한 신용평가모형 운영사례
- Ⅲ. 극저신용대출심사모형 개발을 위한 신용정보 활용가능성



연구진 연구진

연구책임 | 석희정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 복지이슈 FOCUS는 빠른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요현안 및 이슈를 발굴하기 위하여 복지 이슈를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267-9319 Fax: 031-898-5935 E-mail: seokhj@ggwf.or.kr

복지이슈 FOCUS

현장공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심사모형 개발을 위한 | 국내 신용정보 활용가능성 탐색 |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모형개발의 필요성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참여자는 저신용 부실위험군이자 정부와 금융권 등 제도 지원으로부터 배제된 금융복지사각지대
- 도내 저신용·저소득층의 극저신용대출 수요증대에 따라 대출신청 시 금융 및 비금융정보 수집에 기반한 변별력을 갖춘 심사체계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 7등급 이하 대출심사 시 수집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 국에서 법적으로 허용한 국내 신용정보 운영사례를 통해 극저신용대출심사모 형 개발에의 활용가능성 탐색

■ 국내 신용정보결합 활성화를 통한 신용평가모형 운영사례

- 국내 신용정보의 운영체계 및 신용평가 활용정보
 - 국내 신용정보 공유체계는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조회회사인 CB가 신용정보를 수집, 공유하는 이원적 운영체계
- 국내 개인신용평가모형(Credit Scoring)의 도입배경
 - 개인신용평가는 금융소비자의 미래 부도가능성을 평점형태로 평가하여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 최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확대정책 강화

■ 극저신용대출심사모형 개발에의 활용가능성

- 첫째,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제도를 활용한 극저신용대출심사모형 연계방안 강구
- 둘째, 국내 CB사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긍정적·부정적 정보의 균형감 반영한 극저신용대출심사모형 개발 의뢰 및 유료서비스 활용
- 셋째, 극저신용대출 신청시점 채무, 연체 등 부실위험군의 정보등록 기반 재무진단컨설팅 앱을 개발하여 대출에 따른 고위험군 리스크관리 전략도 수립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심사모형 개발의 필요성

■ 모형 개발의 필요성

- 코로나 19 여파로 제도권 금융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2020년부터 극저신용대출사업 추진
 - 2020년 9월 시점 경기도 7등급 이하 극저신용자 수는 961,323명(8.0%)으로 신용등 급제에 따른 7등급(619점) 이하 불량건 183,917명(77.3%), 연체건 82,384건 (33.6%)을 차지, 신용등급이 낮아질수록 불량률과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KCB, 2021)
 - 경기도는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현행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고금리·불법사금융 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7등급 이하 극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소액금융지원을 위해 극저신용대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
 - 1차년도 극저신용대출사업은 총 3차에 걸쳐 차수별 대출금액과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최소 50만원 무심사 대출에서 최대 300만원 한도 연 1% 금리, 5년 만기 상환방식으로 설계되어 총 58,914명의 극저신용층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447억원 대출 실행 (석희정 외, 2021)
 - 극저신용대출사업 실행 2년 차에 접어든 올해도 가계재무 악화에 따른 현금유동성 경 직으로 극저신용대출에 참여한 도민 총 84,414명('21.12월기준)에게 저금리 금융대출 을 지속적 공급 확대
- 경기도의 선도적인 서민금융정책으로써 극저신용대출사업은 정부와 금융권 신용 대출제도로부터 배제된 저신용층을 위한 유일한 저금리 금융대출 공급망
 - 경기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 및 저소득층의 금융접근성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 도의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신청자에 대한 객관적 심사절차를 걸쳐 소액대출을 실행하는 포용금융의 성격
 - 특히 중앙정부에서 실행하는 서민금융대출제도는 주로 신용등급기준 4~6등급에 해당되는 중신용층이 주요 정책대상으로 지원하는 반면, 7등급 이하 극저신용층을 위한 소액 대출상품은 지자체 차원에서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이외는 전무한 상태
 - 최근 정부와 금융권에서 발표한 중·저신용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개선방안도 중신용층의 대출공급(사잇돌대출, 민간중금리대출) 확대에 집중되어 신용점수 요건을 신설한 사잇돌

대출의 경우 신용점수 하위 30%(기존 5등급이하) 차주 중 중신용층에게 유리한 공급 개선방안을 제시함(금융위원회, 2021)

- 상대적으로 불량률과 연체율이 높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은 부실위험이 높다는 이유 로 여전히 정부와 금융권의 금융거래 기피대상으로 분류되어 실질적인 대출 혜택이 불 가능한 상황이며 저신용 금융취약도민이 거의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상 품은 극저신용대출사업뿐임(석희정 외,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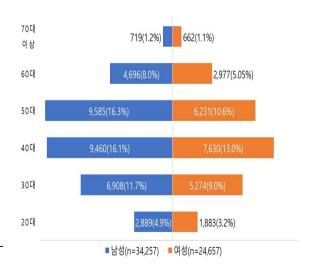
〈표 1〉 2020년도 경기 극저신용대출 차수별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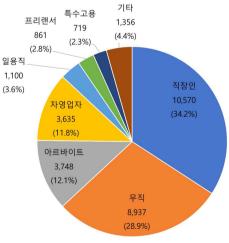
내용	1차(2020년 4월∞)	2차(2020년 7월∽)	3차(2020년 10월∞)
대출금액	긴급(무심사)(50만 원) 일반(심사)(300만 원)	무심사(50만 원) 심사(300만 원) 불법사금융 피해자(최대 300만 원)	고금리 이용자(300만 원) 2030 청년(300만 원) 심사(300만 원 한도)
이자율	연 1%		

자료: 경기복지재단 사업결과 보고서 내부자료(2021)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참여자는 저신용 부실위험군인 동시에 정부와 금융권 등 제도권 지원으로부터 배제된 금융복지사각지대
 - 1차년도('20년) 경기극저신용대출 참여자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연령분포는 경제활동인 구에 해당되는 40대와 50대(각 29.0%, 26.8%)가 가장 많았고, 직업유형은 직장인 (34.2%)과 무직(주부 포함, 28.9%) 순으로 나타남

〈그림 1〉참여자의 연령분포(n=58,914) 〈그림 2〉참여자의 직업구성(n=30,926)





자료: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참여자 특성 분석(석희정 외, 2021)

- 가구유형 중 1인가구(25.9%)가 가장 많았고, 거주형태는 월세(54.0%)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여 현금유동성 문제 발생 시 사적이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계망이 가장 취약했고, 주거 불안정의 심각성을 확인함

〈그림 3〉 참여자의 가구분포(n=9.806)

〈그림 4〉 참여자의 거주유형(n=9,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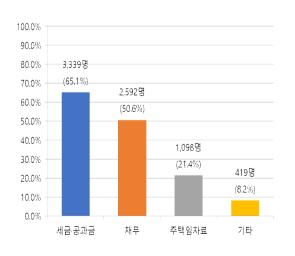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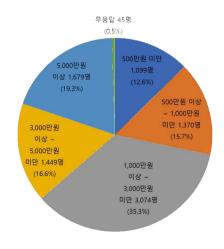
자료: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참여자 특성 분석(석희정 외, 2021)

- 참여자의 연체유형은 대출신청 기준 세금 및 공과금(65.1%)과 채무(50.6%), 주택임차료(21.4%) 순으로 나타났고, 채무규모는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31.2%)이 가장 많이 차지함

〈그림 5〉참여자의 연체유형(n=5,127)

〈그림 6〉참여자의 채무규모(n=8,716)





자료: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참여자 특성 분석(석희정 외, 2021)

- 도내 저신용·저소득층의 극저신용대출 수요증대에 따라 대출신청 시 금융 및 비 금융 정보수집에 기반한 변별력을 갖춘 심사체계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 경기극저신용대출은 기존 신용평가체계(10등급 기준)를 활용하여 신용정보회사(NICE, KCB)에서 제공하는 10등급 기준 7등급 이하의 극저신용자를 모집단으로 설정, 극저신용대출 수행기관(사회연대은행, 주빌리은행, 지역자활협회)을 통해 신청 및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함
 - 현행 극저신용대출 심사기준(2020)에 따르면 차주 관련 기초현황점수(정량지표, 55점) 와 심사점수(정성지표, 45점)로 구분되어 있고, 심사기준별 세부심사항목은 인구학적 정보(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가구원, 주거형태), 경제상황(정부지원 여부, 소득유무, 소득유형, 가계소득, 연체유형, 부채규모), 신용정보(신용등급, 채무조정유형), 대출 관련 평가(대출용도, 상환계획, 긴급성, 상환가능성 등) 내용으로 구성됨
 - 1차년도 극저신용대출의 심사기준은 저신용층의 금융 및 비금융정보를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으나, 소액대출의 특성상 대출신청자가 제공하는 기초정보수집의 제약과 제출 서류의 부정확성, 심사지표의 우선순위 배점기준 등 향후 차주의 신용정보에 대한 정확 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될 여지가 존재
 - 이에 따라 2차년도 대출사업부터 기존 선정기준 상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보완하여 개 선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저신용층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와 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에 기반한 심사기준으로는 미흡한 상황
 - 극저신용대출 참여자 정보가 집적되는 가운데 직업, 가구소득, 연체 및 채무규모, 대출 긴급성 등 기초정보의 정확성 및 검증가능성을 고도화하기 위해 차주의 금융정보뿐 아 니라 비금융정보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수집·활용·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극저신용 평가모형을 개발할 필요

(표 2)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사기주	민 세브하	모(2020)
\표 Z/ 경기	ㄱ시긴궁네놀	급시기판	ㅊ 게ㅜ강	 (2020)

평가방식	심사기준	심사항목	
	대출용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사업장 임대료, 사업장 운영자금, 직원월급, 통신비, 대출상환, 보험료, 기타	
	상환계획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용돈, 정부지원금, 기타	
정량평가	신청자 개인정보	가구원수, 거주형태(월세·임대아파트, 전세, 자가, 무상거주, 기타), 가계소득 및 지출규모, 부채규모, 연체유무, 채무조정 이용경험, 대출 신청이유(실직, 휴직, 폐업, 휴업, 경영악화)	
	긴급성	대출용도, 연체현황, 대출금 신청계기(코로나 관련성) 등	
	상환가능성	상환계획, 가계수지현황, 연체여부, 부채규모, 채무조정제도 이용경험 등	
정성평가	평정자 가점	평가항목 이외 상환의지, 개선효과, 채무조정 등 가점부여	

- 경기극저신용대출 확대에 따른 7등급 이하 대출심사 시 수집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에서 법적으로 허용한 국내 신용정보 운영현황과 사례들을 통해 극저신용대출심사모형 개발에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함
 - 2020년 경기극저신용대출사업 도입에 따라 금융취약도민을 위한 금융대출이 실행되고 있지만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적합한 대출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정보 수집에 어려움 발생
 - 현행 국내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권 대출거래 심사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제공 등 정보 공유체계가 확립되어 공익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 최근 국내 금융권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안적 개인신용평가모형 운영사례를 검토함으로 써 향후 저신용자를 위한 맞춤형 신용평가모형 및 금융상품 개발에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함

□ 국내 신용정보 결합제도를 통한 신용평가모형 운영시례

■ 국내 신용정보의 운영체계 및 신용평가 활용정보

- 국내 신용정보 공유체계는 한국신용정보원(Public Credit Registry Agency)과 신용조회회사인 CB(Credit Bureau)가 신용정보를 수집, 공유하는 이원적 운영체계(김종윤, 2019)
 - 우리나라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을 위해서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공익적 목적 등 경우에는 사전동의가 없어도 개인신용정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까지 규정함(법 제32조 제1항~제6항)
 -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은 기관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에 신용정보 제공요 청권이 있음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 하여 신용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된 법

- 한편 신용조회회사(CB)는 금융회사의 수요에 따라 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 업으로서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서만 공공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즉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직접 제공받지 못함
- 하지만 렌탈사나 이동통신사 등 비금융회사로부터 직접 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특히 대학생, 주부 등 금융이력부족군(Thin filer)의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획득이 가능해 향후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비금융 및 대안정보의 활용 증가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Credit)를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신용정 보로 정의하고 신용정보의 종류를 법적 명시. 신용평가 시 활용정보의 확대 추세
 - 일반적으로 신용정보란 개인정보의 한 종류로 금융거래 주체 간에 미래 시점에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현재 경제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정재욱, 2011)
 -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는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자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등을 말하고,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 능력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개인신용정보라고 규정함(신용정보법 제2조 제1~2호, 시행령 제2조)
 - 동법 시행령은 신용정보의 종류는 크게 개인과 기업 또는 법인으로 구분하고, 신용정보 주체별로 신용정보의 종류를 제시(시행령 제2조1항,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조의2)

(표 3) 신용정보법에 규정된 신용정보의 범위

구분		신용정보의 종류	
개인	식별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성별, 국적 등	
	신용거래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 포함),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와 관련된 거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문란행위와 관련 금액 및 발생·해소 시기 등	
	신용능력정보	직업,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등	
기업/법인	식별정보	상호 및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여업소 소재지, 설립연원일, 종목, 대표자 성명 등	
	신용거래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 포함),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와 관련된 거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문란행위와 관련 금액 및 발생·해소 시기 등)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정보 포함)	
	신용능력정보	연혁, 목적, 영업실태, 주식 또는 지분보유현황 등 개황, 대표자 및 임원 사항, 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 주요계약 등 사업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감사인이 삼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출처: 신용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

- 국내에서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정보는 불량정보, 우량정보, 비금융정보, 대안정보 순으로 점진적 확대 추세임. 200년대 초반에는 연체, 체납정보 등 불량정보 위주로 공유되다 신용거래 확대에 따라 우량정보 확보를 통한 대출상환정보 및 카드실적정보 등 수집 확대
- 하지만 금융거래정보 위주의 기존 신용평가방식은 금융거래 이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를 할 수 없어 4대 보험료 및 수도·가스요금 납부내역 등 비금융정보(Non-financial Information) 또는 대안정보(Alternative information)의 활용 필요성 지속적 제기
- 2015년 이후 일부 신용조회회사(CB)에서 자체적으로 개인회원들이 비금융정보등록 시 신용평점 가점 부여를 운영하고(NICE, 2015) 있고, 최근에는 부동산정보(등기부등본, 경매정보 등), 통신정보(사용금액, 미납금액, 이용량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눈)에 공개 정보 등 다양한 대안정보를 활용, 신용위험도 예측력 강화방안 추진(금융감독원, 2018)

■ 국내 개인신용평가모형(Credit Scoring)의 도입배경

- 개인신용평가는 금융소비자의 미래부도 가능성을 평점 형태로 평가하여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 신용평가모형의 개념은 Durand(1941)에 의해 처음 제시된 용어로 Durand(1941)은 카이자승 검정을 이용해서 우량고객과 불량고객을 의미있게 판별해줄 수 있는 변수들을 확정하고, '효율성 지표(efficiency index)'를 제시, 이후 다양한 분야(일반소비자, 개인사업자, 기업 등)에서 신용평가모형 개발·활용(홍재범 외, 2008)
 - 일반적으로 개인신용평가란 개인이 보유한 특성으로부터 개인의 채무상환능력 및 의지를 평가하여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평점을 산출하고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함
 - 개인신용평가모형은 금융회사와 신용을 거래하는 금융소비자의 미래부도 발생가능성을 평점(Score) 형태로 예측하는 수리모형으로 소액의 다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표준 화되고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적용함(김종윤, 2019)
- 국내 개인신용평가는 1997년 IMF 이후 신용위험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2003년 카드대란 사태를 계기로 금융분야 평가체계로 도입
 - 1997년 IMF 이후 신용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업평가에만 집중하던 관행을 벗어나 개인신용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함. 이에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평가 시스템을 구축, 신용조회회사(CB)²들은 금융권과 비금융권이 수집한 정보를 수집

- 1990년대 중반부터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관행이 담보위주에서 무담보 신용기반 대출로 변화하고, 대출자에 대한 신용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개인신용평가모형 도이 본격화
-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금융권 정보공유 인프라³를 구축,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 평가모형 개발 및 정교화를 통해 개인신용평가체계 구축
- 개인신용조회기관들은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평가점수를 산정하며 기관 별 개인신용평점에 반영되는 주요평가요소는 상환이력정보, 현재부채수준, 신용거래기 준, 신용형태정보로 상이한 비율을 반영하여 평점 산출

〈표 4〉 CB사별 개인신용평가의 평가요소

평가요소	반영비중			
임시판자	나이스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서울신용평가정보(SCI)	
상환이력정보	37%	24%	35%	
현재부채수준	23%	28%	30%	
신용거래기간	12%	15%	13%	
신용형태정보	28%	33%	22%	

출처: NICE, KCB 반영비율은 2020년 기준, SCI 반영비율은 2019년 기준

- 기존 개인신용평가모형은 금융거래이력 데이터 위주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금융고객의 신용도 평가 적합도는 높은 반해 금융이력정보가 없거나 부족한 금융이력부족자와 연체 및 채무이력이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신용도 평가에 불이익 발생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신용평가모형은 통계적이고 수리적 모형으로 금융소비자의 가까운 미래의 부도가능성을 평점 형태로 예측하는 특성을 지님
 - 하지만 본 모형의 평가요소가 금융회사 내부 데이터와 신용조회회사(CB)에 집중된 금 융거래정보 위주의 신용정보로 구성되어 있어 금융거래실적이 충분한 금융소비자의 신 용도 평가 시 변별력 있고 안정적인 신용평가가 가능
 - 반면, 금융거래이력이 없거나 부족한 금융이력부족자와 연체 및 채무이력이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신용평가에 필요한 평가항목이 부족하거나 없어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 거나 불리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현실
 - 금융이력부족자는 최근 2년 동안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없거나 3년 이내 대출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로 분류되며 2017년 이후 1270만 명 안팎을 유지(NICE, 2021)

² 국내 신용조회회사는 NICE평가정보, KCB, SCI평가정보 세 곳에서 신용조회업을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운영

³ 은행연합회(現 신용정보원)를 통해 전 금융업권 개인신용정보가 집중·공유

- 2021년 6월말 기준 신용등급 대상자(47,307,806명) 가운데 27.1%(12,807.275명)이 금 융이력부족자로 나타났고, 60대 이상(4,179,087명), 20대(3,227,319명), 30대(1,723,466명), 50대(1,450,496명) 순으로 20대 청년과 6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 더구나 대다수 금융이력부족자들은 700점대의 낮은 신용점수(CB등급 기준 4~7등급)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이력부족군 중 상당수의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이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
- 결과적으로 금융거래정보 위주의 개인신용평가모형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양산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이들을 위한 더욱 정교하고 공평한 신용평가모형 개발에 대한 요구 증대

금융이력부족자 현황 평점 전국민대상자 전체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3,442 900점 이상 19,615,028 29 601 6,495 13 949 1,140 4,575 299,581 800점 이상 11,987,821 2,641,642 160,336 1,357,962 214,881 236,868 372,014 12,588,975 9,554,831 739,230 1,836,700 1,375,288 1,001,497 1,020,160 3,581,956 700점 이상 35,316 5,679 5,787 7,554 10,457 600점 이상 866,875 21 5,818 500점 이상 139,676 235 108 33 34 1 7 400점 이상 50,275 38 20 3 1 6 300점 이상 1,902,754 545,595 123 39,438 100,416 179,382 200,665 25,571 200점 이상 152,229 17 6 200점 미만 4.173 전체 47,307,806 12,807,275 899,715 3,227,319 1,723,466 1,327,192 1,450,496 4,179,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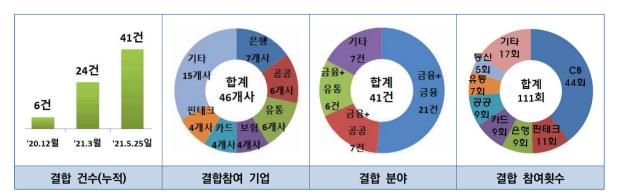
〈표 5〉 기준평점별 금융이력부족자 현황('21년 6월 기준)

출처: NICE 자료(경향신문 기사 재인용)

■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확대 강화

- 의 최근 금융정책당국에서는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과정에 금융정보 이외에 비금융정보를 결합·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금융위, 2020)
 - 2020년 7월 28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가명정보 결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금융거래고객들의 대 안정보를 개인신용평가모형에 결합·반영함으로써 그동안 배제되어왔던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신용평가모형 및 금융상품 개발이 활성화되는 계기 마련(금융위, 2021)
 -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신용정보법」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결합할 수 있게 됨

- 둘째,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총 4개 기관(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국세상, 금융결제원)으로 지정하여 데이터 결합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위험관리체계 마련하도록 함
- 셋째, 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정보주체는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사업자,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융회사 등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전송대상 정보의 범위는 금융거래정보, 국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4대 보험료 납부정보, 통신료 납부정보 등 포함
- 넷째, 기존 금융권의 정보보호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정보관리·보호실태 점검 및 점검 결과를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 위탁) 제출해야 하고, 금융회사와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처음 도입,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등에 자동화된 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할 권리보장(동법 제36호 제2호)
- 신용정보법령 개정을 통해 금융이력부족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평가 상 불이익이 해소되고 이들의 신용도 개선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20년 8월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제도 시행으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신용평가모형 및 금융상품 개발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 근성이 실질적 확대(금융위, 2021)
 - '20년 8월 가명정보 결합제도 수행에 따라 기존 개인신용평가모형의 한계로 지적되었 던 금융소외계층의 불공평한 신용도 평가에 따른 불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21년 5월 기준 총 46개사(금융 31개사, 비금융 15개사)가 데이터를 제공하여 35개 사가 결합데이터를 받아 분석·활용하고 있음
 - 결합분야별로 금융기관 간 결합(21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7건), 금융기관과 유통업체(6건) 순으로 나타났고, 결합참여횟수는 신용조회회사(44회), 핀테크(11회), 은행·카드(9회) 순으로 데이터 결합을 추진
 - 데이터전문기관에서 다양한 결합사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결합 및 분석을 통해 비금융정보 기반 맞춤형 대안신용평가 등이 개발되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이 확대되고 있음
 - 일례로 온라인 사업자 정보와 CB사정보를 결합하여 온라인 소상공인 대출심사모형 및 대출상품 개발이 이루어져 전통적인 신용평가 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온라인 소상공 이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짐



〈그림 7〉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제도 운영현황

- 또 다른 사례는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층에게 적합한 신용평가를 위해 청년층이 이용하는 핀테크사의 고객결제·행동정보와 은행의 여수신정보를 결합·분석하여 청년층을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함으로써 금융이력 부족으로 금융접근성이 낮은 청년층도 다양한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짐
- 그밖에도 다양한 개인화물차 등 안전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도 연구가 진행 중이며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신용대출 조건 개선 등 금융지원 활성화 가능
- 그동안 금융이력정보에 기반한 개인신용평가방식으로 인해 신용평점 및 금융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금융소외계층도 금융정보 외 다양한 비금융정보들을 신용평가 모형에 반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민금융지원정책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됨
- 최근 금융당국에서는 다양한 기관에 분산된 정책수요자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햇살론 15'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음. 즉 신용집중 기관이 보유한 금융취약계층의 대출금리 및 잔액정보와 CB사가 보유한 신용평점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및 금리현황 분석을 통해 '햇살론 15'등 맞춤형 금융지원정책 수립에 활용 중임

〈그림 8〉 취약계층 금융지원정책 수립 활용사례

□ 극저신용대출심사모형 개발을 위한 신용정보 활용가능성

- 첫째,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제도를 활용한 극저신용대출심사모형 연계방안 강구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결합 이 법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공식력 있는 데이터전문기관(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을 통 해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기관들의 자체 데이터가 결합되어 분석·활용되고 있는 상황
 - 특히 금융이력이 부족하거나 부재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신용평가모형이 개발되어 이들의 금융접근성이 점차 개선되는 긍정적 변화가 시작된 만큼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극저신용대출사업 심사모형 개발에도 활용 가능
 - 연체정보 의존도가 높아 일반 금융소비자군에 비해 불리한 신용도 평가를 받는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뿐 아니라 대안적 정보(비금 융정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극저신용대출 심사모형을 개발한다면 현행 극저신용대출 심사기준을 구성하는 정량 데이터의 정확성을 비교적 쉽게 해결 가능
 - 무엇보다 소득과 같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요소의 정확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심 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어 극저신용대출사업의 지속가능성 담보하기 어려움
 - 향후 극저신용대출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의 신뢰성과 공신 력 확보가 관건이며, 데이터수집 및 분석의 표준화와 이용의 편의성도 보장되어야 함
 - 따라서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심사모형 개발을 위해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 결합제도를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전문기관 간의 협력·연계방안을 강구해야 함
- 둘째, 국내 CB사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긍정적·부정적 정보의 균형감 반영한 극저신용대출심사모형 개발 의뢰 및 유료서비스 활용
 - 금융위는 2018년부터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방안'을 통해 CB사가 개인신용평가에서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도록 유도(금융위원회, 2018)
 - 이에 따라 기존 개인신용평가모형에 CB사의 비금융정보 활용이 확대되었고, 긍정적 공 공정보4 제공 시 가점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
 - 또한 금융 및 비금융정보를 분리하여 통신료 실적 등 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한 독자적인 신용점수도 도입

⁴ 긍정적 공공정보는 사회보험료, 세금납부실적, 통신비 납부실적 이외에도 민간보험료 납부정보 및 체크카드 실적 등으로 확대(금융위, 2018)

- 특히 비금융정보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대출심사의 주요 평가요소인 상환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소득정보(추정소득)를 반영할 수 있게 됨
- 최근 중앙정부의 서민금융기관에서도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차주의 등록소득을 CB사에서 추정소득으로 산출, 소득으로 인정하여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추세이며, 추정소득 이외 자택정보, 부동산시세·경매정보, 직장·직업·직위정보, 자산소득정보, 통신정보 등 다양한 대안정보들을 신용평가요소로 포함시켜 대다수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사업목적에 따라 유료서비스로 이용
-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극저신용대출심사모형을 개발할 경우 데이터수집 및 정보처리 투입비용, 개인정보보호, 전산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제약이 예상되는 바, 금융분야에서 오랜 데이터 집적과 개인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해온 공신력 있는 CB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극저신용자를 위한 맞춤형 대출심사모형을 개발・활용하는 방안 모색
- 그밖에도 신속하고 편리한 데이터 추출 및 동태적 정보를 활용한 예측력 향상, 연체 및 과다채무 대상자 리스크관리 전략 등 광범위한 활용도 확대
- 마지막으로, 극저신용대출 신청시점 채무, 연체 등 부실위험군의 정보등록 기반 재무진단컨설팅 앱을 개발하여 대출에 따른 리스크관리전략 마련
 - 2020년 극저신용대출 참여자의 연체비중은 8.7%(5,127명)으로 주로 세금·공과금, 채무, 주택 임차료 등으로 나타났고, 채무규모도 연체율과 유사한 분포로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채무가 31.2%(3,074명)로 가장 높음
 - 극저신용대출을 받은 차주의 기존 연체 및 채무규모를 대출신청 초기단계에서 미리 파악하여 대출 실행과 동시에 맞춤형 재무진단 및 상담을 제공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인센티브 전략과 부실률 제고를 위한 리스크관리 전략도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극저신용대출 신청시 채무나 연체 등 부실위험군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이들의 등록정보에 기반한 재무진단컨설팅 앱을 개발하여 대출 실행과 함께 신용회복 및 금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후관리방안도 마련해야 함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2018). "금융감독혁신과제 : 5대부문, 17대 핵심과제". https://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1514
- 금융위원회(202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https://www.fsc.go.kr/no010101/74469?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srchBeginDt=2020-07-28&srchEndDt=2020-07-28
- 금융위원회(2021,a).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https://www.fsc.go.kr/no010101/75805
- 금융위원회(2021,b).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제도 운영현황". https://www.fsc.go.kr/no010101/75973
- 김종윤(2019). "통신빅데이터 활용 개인신용평가모형(통신스코어) 개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찬·유병준(2018). "신용정보 및 공공빅데이터 분석사례: 체납자 회수가능성 예 측모형 개발 및 체납정보 시스템 개선", 한국경영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 경향신문(2021.9.27). "4명 중 1명 금융이력부족자…"세분화된 신용평가 기법 마련돼야".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10927 1128001.
- 법제처(20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석희정·박성진·원도연(2021).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참여자 특성분석』. 경기복지재단.
- 정재욱(2011). "개인 신용정보의 활용도 제고와 개인 프라이버시보호". 『하나금융연 구소 월간하나금융』, 3월호: 1-5.
- 윤성철·윤명희·서현석(2002). "국내 소매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이명식(1998). "평점제를 이용한 소비자 신용위험 모형개발". 『경영학연구』, 6: 1-20.

- 한준태·정진아(2016). "학자금 대출연체의 신용위험 평점모형 개발". 『한국데이터정 보학회지』, 27(5): 1,293-1,305.
- 홍재범·양정식(2008).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의 부실예측모형 구축". 『한국인터넷전자 상거래연구』. 8(2): 271-282.

Elizabeth Mays(2004). Handbook of credit scroing. ePharos.

KCB, 2021. 경기도 신용등급별 불량건과 연체건 분포. 내부자료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 FOCUS 2021-15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심사모형 개발을 위한 국내 신용정보 활용가능성 탐색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대표이사 직무대리 문정희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